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18. 08. 23.
- 회부일 : 2018. 08. 27. (의안번호 : 18-69)

2. 제안이유

-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2018년도 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 조성목적

- 남북평화협력 무드가 본격화 될 경우 구 단위 교류협력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을 추가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 신속히 기금을 투입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구분(편성목)	변경전(기정액)	변경후(경정액)	증 감
예치금	50,000천원	150,000천원	100,000천원

○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기정액	경정액	증감	비고
합계			256,663	356,663	100,000	
세외수입			4,100	4,100	0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	4,100	0	공금계좌, 정기예금 발생 이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52,563	352,563	100,000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714-01 예치금회수	202,563	202,563	0	2017년도 말 기금잔액 예치금
내부거래	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	150,000	100,000	전입금 1억 증액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기정액	경정액	증감	비고
합계			256,663	356,663	100,000	
구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50,000	50,000	0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260	1,260	0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48,740	48,740	0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재무활동			206,663	306,663	100,000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	602-01 예치금	206,663	306,663	100,000	예치금 1억 증액

4. 검토의견

-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 계기로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접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선언 이후 지자체 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 마포구도 2014년도에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평화협력 무드가 본격화 될 경우 구 단위 교류협력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 협력기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을 추가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고자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은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만큼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참 고 사 항

○ 기금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14년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기금용도
 -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경비
 -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130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